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3
------------	-----

2014년 12 월 17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1월 12일, 김태수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 장치의 설치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제5호나목)가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행안전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행안전을 높이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제2조제7호 및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제5호나목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18 ~ 2014. 11. 25

-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수정 동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나목)가 마련됨에 따라¹⁾, 현행 조례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의 정의 및 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

5.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

나.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나.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 관련

- 현재 서울시에는 32,251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8,514개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23,737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²⁾

또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총 9,055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도형형 5,719대, 숫자형 3,336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는 8,57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³⁾

1) 2014.7.2.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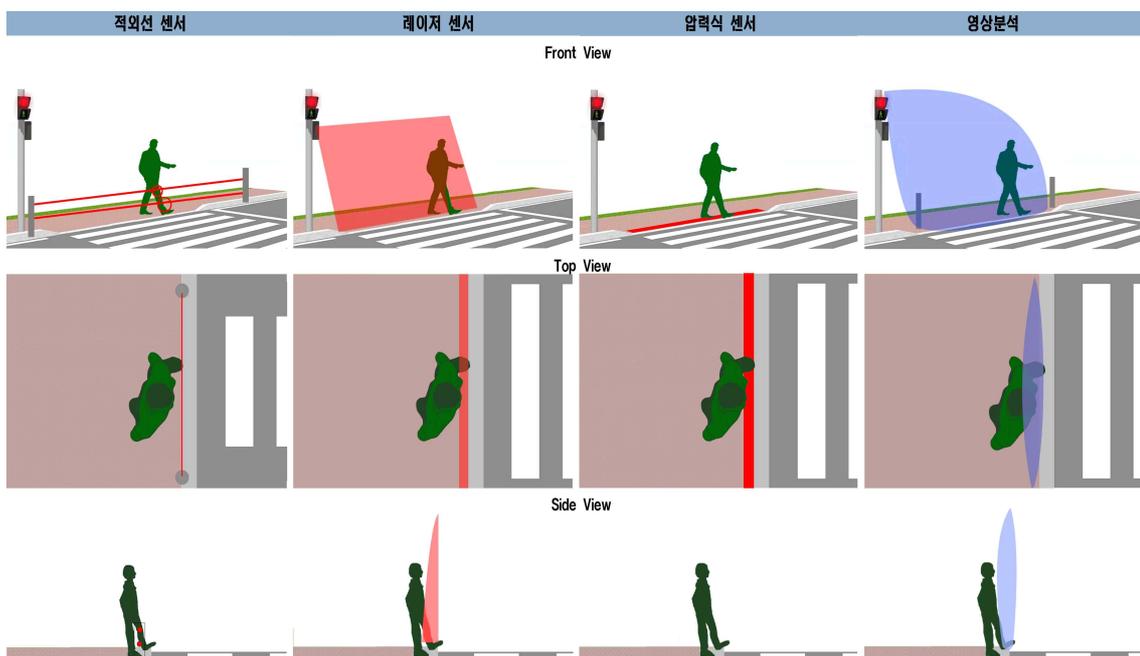
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3)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물시스템(T-GIS)

- 현행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및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에 의존함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도록 하고,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상의 교통안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감지하여 음성으로 안내함으로써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들에게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물론, 실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클 것으로 기대됨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작동예〉(출처: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중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 바 있음⁴⁾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현행 조례에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⁵⁾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2014.7월, 경찰청, p.2

5) 보행자전거과-13749(2014.12.4.)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관련 법이 재개정될 경우를 고려하여 개별 사항을 일일이 조문에 열거하기 보다는 관련 법의 해당 조문을 현행 조례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수정될 필요가 있음

답변 : 현행 조례에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함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설치·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3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설치·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3조에”를 “제3조·제4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교통전문위원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6. (현행과 같음)</p> <p><u>7. 제2조제7호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자 또는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안전보행을 알려주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p> <p>1. 법 <u>제3조에</u>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p> <p>2. ~ 4. (생략)</p>	<p>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현행과 같음)</p>	<p>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p> <p>1. 법 <u>제3조·제4조에</u>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p> <p>2. ~ 4. (개정안과 같음)</p>
<p><u><신설></u></p>	<p><u>제9조의2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 설치 등)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u></p>	<p>(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3조에”를 “제3조·제4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p> <p>1. 법 <u>제3조에</u>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p> <p>2. ~ 4. (생략)</p>	<p>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p> <p>1. 법 <u>제3조·제4조에</u>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p> <p>2. ~ 4. (현행과 같음)</p>